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2. 보험기간

종신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5년납	만 15세 ~ 60세
10년납	만 15세 ~ 60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20년납	만 15세 ~ 50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60세
70세납	만 15세 ~ 60세

4.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예정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나이,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 ①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매년 $(\text{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200\%)$ 로 한다.
- ③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①’ 내지 ‘②’ 보험료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7.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기본사망보험금 + 변동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나. ‘가’에서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단,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 시에는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가’에서 「변동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된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월계약 해당일마다 계산하여 다음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라. ‘다’에서 「예정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한다.)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8.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사망보험금을 말한다.
- 나. ‘가’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적립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다. 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계약은 자동 해지 처리된다.

9.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의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①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②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포함)}}{\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다. 「감액(또는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0.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1.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변동보험금에 대한 유지비 포함)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한다. 단,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수금비제외, 변동보험금에 대한 유지비 포함)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단, 수금비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한다.

12.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계약 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하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의무납입기간」이라 하며, 의무납입기간에 납입하여야하는 24개월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의무납입보험료」라 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 ① 의무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고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 보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단,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 중도인출로 인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총액」 도달여부 및 연간납입한도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본사망 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단,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란 기본사망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그 감소된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이라 한다.

라.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13.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월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14.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가’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한다.
- 다. 부활(효력회복)시 기본사망보험금 및 변동보험금은 해지시점의 기본사망보험금 및 변동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이후 변동보험금액은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계산하여 적용한다.
- 라.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마. ‘라’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을,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 바. ‘가’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이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15.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

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 ①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 단,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마.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 적립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이

경우 상환된 금액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 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③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④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장 및 계약유지 비용에 사용된다.
 -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중 계약소멸 또는 해약 등 감소계약에 대한 계약자 적립금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 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① 펀드의 유형

- ⓐ 채권형: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 혼합1형: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②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③ ‘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①’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ε_1)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ε_2)에 관한 사항

①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특별계정 운용보수(ε_1)	특별계정 수탁보수(ε_2)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2630137%)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90%
혼합1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7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2084931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068493%)

- ② 특별계정이 다른 간접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①’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이외에 해당 간접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펀드의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1개월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변경 및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나」의 「③」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변경 또는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단, 최저 펀드 이전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④ 회사는 「①」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적립금의 0.1%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②」의 현금이전시 공제한다. 단, 수수료 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 ⑤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③」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③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 ①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

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 ② 좌당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 ①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①’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 ‘ⓐ’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 ‘ⓐ’ 및 ‘ⓑ’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비용, 보수, 회계감사비용 및 채권평가비용 등을 펀드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 투자운용인력 변경
 -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 「ⓐ」 및 「ⓑ」 사항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①」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③ 회사는 「①」 및 「②」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21. 기타사항」의 「나」에 따라 이체한다.)

- ②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한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③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④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⑤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
- ⑥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①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② ‘①’에 의한 자금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0.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시 적용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의 월납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5,000만원 미만 (단, 4,9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단, 9,8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기본보험료의 1.5%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단,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기본보험료의 3.0%
2억원 이상	기본보험료의 4.0%

21. 기타사항

가.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한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23개월분까지 선납 가능)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선납된 보험료의 할인율은 예정이율로 계산하며, ‘①’의 경우 선납보험

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 ③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나. 납입보험료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투입 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② ‘①’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제1회 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납입일로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또한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기본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다.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라.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 ②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마.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특별계정 총좌수
- ② 특별계정 기준가격
- ③ 특별계정 자산총액
- ④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⑤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⑥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⑦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 ⑧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바. 회사는 상품 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사.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보험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아.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①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 ②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자.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서 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